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광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 2759 발 의 년 월 일 :2021년 10월 13일 발 의 자 :이광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김상훈, 김호진, 송도호,

송아량, 우형찬, 이승미, 이은주, 정지권, 정진철, 최웅식, 추승우 의원(11 명)

1. 제안이유

○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시 승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는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. 이에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 시운수종사자단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 여 택시운송사업의 생존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재정지원 사업 신설 등(안 제1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	제10조(재정지원 등) ①
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	
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	
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	
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	
수 있다.	
<u><신 설></u>	1.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
	한 법률」제7조제1항 각 호에
	해당하는 사업
<u>1</u> . ~ <u>4</u> . (생 략)	$\underline{2}$. \sim $\underline{5}$. (현행 제 1 호부터 제 4 호
	까지와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